

보수교육지침서

• 제정 1983. 2. 17. • 개정 1986. 2. 19.
 • 개정 1983. 6. 8. • 개정 1986. 6. 24.

목 적

치과의사의 보수교육 목적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치과질환의 다원화에 대처하고 치의학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신뢰받는 치과의사로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 함에 있다.

일 반 지 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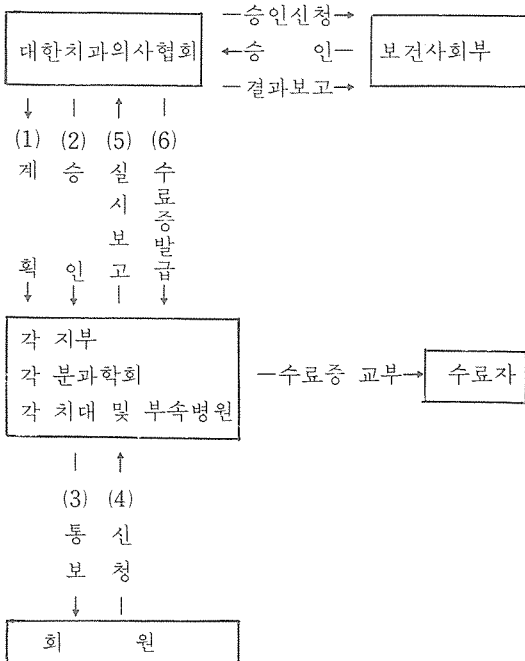
： 보수교육기관 및 종류

기 관	종 류
대한치과의사협회 각 지부 각 치과대학 및 부속병원 전공의 교육기관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	종합학술대회 순회 치과의사 강좌 시청각 교육 개인의를 위한 연수강좌 임상 기초 치의학 강좌 기타 각종 학술대회

방 칩

1. 지속적인 보수교육으로 평생교육을 유도
2. “공부하는 치과의사상”의 부각
3. 참여자의 경비부담으로 자기 발전적 주인의식 부여

교 육 실 시 체 계



2. 교육 면제대상 :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는 보수교육을 면제하며 면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가. 기초 치의학 전공자 : 공인연구소 연구요원 나. 환자의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자
 - 다. 군복무중인 자
 - 라. 전공의
 - 마. 당해년도 6개월이상 휴직자 및 해외 체류자
 - 바. 대학원(치의학 전공 석·박사)재학생(개원의 포함)
 - 사. 당해년도 12월 말 기준하여 만65세 이상자는 년5점만 취득
 - 아.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
3. 경 비
 - 가.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비보조
 - 나. 수익자 자담원칙
4. 계획의 수립

보수교육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매년 11월 말까지 익년도 교육계획서를 수립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가. 교육기간 :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나. 계획의 수립 :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) 장소 : 피교육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 시·도에서 실시
- 2) 교육 예정인원 및 개최일시
- 3) 강사의 소속 및 교과과목별 이수시간
- 4) 보수교육 소요예산 및 피교육자의 경비부담액
- 5) 기타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협회장이 요구하는 사항

다. 강사자격

- 1) 대학의 전임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
- 2) 2년 이상 전공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임 치과의사
- 3) 기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

라. 교육방법 선정

- 1) 강의일변도 지양
- 2) 시청각 교재활용
- 3) 실습교육 장려

마. 교육내용 선정

- 1) 실제 임상분야
- 2) 최신 치의학정보
- 3) 치과와 관련된 교양강좌(20% 이내)

5. 점 수

년10점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6. 승 인

가. 제반 보수교육은 협회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한다.

나. 교육계획의 변경 및 추가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를 30일 전에 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.

7. 보 고

보수교육 결과는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거 보

교육종류	점 수	년 상 한
1) 피교육자		
가) 승인강좌	1 시간 / 1 점	* 각 시·도지부 : 7 점 * 분과학회 : 총 3 점 * 치과대학 : 총 3 점 * 기타기관 : 총 3 점
나)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	1 회 / 3 점	* 3 점
다) 초록발표, 구연	1 회 / 2 점	* 2 점
라) 전시(포스터, 테이블 클리닉)	1 편 / 2 점	* 2 점
마) 시청각 교육	1 편 / 1 점	* 2 점
바) 논문게재	1 편 / 3 점	* 3 점
사) 저술(치의학 관계)	1 편 / 5 점	* 5 점
아) 국제학술대회 참석(협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)	1 회 / 2 점	* 2 점
2) 교육담당자 : 학생, 전공의 교육 및 교육직접담당자	1 시간 / 1 점	* 5 점
3) 기타 : (1) 1 과목당 2 점을 초과할수 없고 동일과목의 중복이수는 인정받지 못한다. (2) 소속 시·도지부(또는 분회)의 학술대회 또는 강좌를 의무적으로 2 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 (3) 타지부에서 수강시 소속지부의 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한다. (4) 협회 주최 종합학술대회가 없는 해에는 2 개지부 이상 공동개최 학술대회는 3 점을 인정한다. 단 1 일 8 시간 이상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(5) 각 보수교육기관은 교육 개최시 별지서식 제 4 호에 의거 보수교육 참가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.		

고한다.

가. 각급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) 일시, 장소, 제목, 연자성명,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(면허번호순에 의거 교육이 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)
- 2)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

나. 배교육 실시후 15일 이내 협회에 결과 보고

8. 감독 및 점수기록 관리

각 보수교육기관은 교육이수상황을 책임있게 감독 및 기록하여 수시조회에 응할수 있도록 한다.

9. 교육계획 공고

치의신보 및 협회지 고정란에 공고한다.

10. 이수증 교부

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. 교육을 10점이상 이수한 회원의 요청이 있을때 협회는 즉각 이수증을 교부한다.

11. 별 칙

가. 보수교육 불성실기관은 협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교육기관 인정을 취소시킬수 있다.

나. 1년10점 미이수자는 의료법 제53조 및 동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할수 있다.

12. 보 칙

가. 보수교육기관은 자체평가회를 개최하여 교육상의 문제점, 개선방안등을 건의토록 하며, 협회는 최우수 프로그램을 발굴, 시상할수 있다.

기 관 별 추 진 업 무

기 관	추 진 업 무
대한치과의사 협회	1. 교육전반에 관한 계획, 승인, 시간책정 및 평가 2. 제도적 보완(정관보강 및 지침수립) 3. 교재 및 신자료 4.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 안내 홍보 5. 수료증 발급 6. 보사부 정기보고
시·도 지부 분과 학회 치과대학 및 부속 병원 기 타	1. 신교재 지속적 발굴개선 2. 교육계획 수립 및 개최안내 홍보 3. 자체평가 및 보고

(제반 양식은 생략했습니다)

池長孫 稅務會計事務所

法人設立. 合併. 清算. 決算. 調整計算書

審査. 審判請求. 稅務顧問. 記帳代理

稅務士 池 長 孫

事務所：서울特別市 中區 仁峴洞2街 181-2(세운B/D 301號)

電 話：265-2376. 8838